

디에스 Brave S 일반 사모투자신탁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553F0EP2565)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디에스자산운용(주)(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과 신탁업자인 신한투자증권(주) (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자산에 제한이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사모형"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9항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종류형"이라 함은 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법9조제1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법249조의2 및 법 시행령 제271조에 의한 투자자(이하 "적격투자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0.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한 판매회사들을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디에스 Brave S 일반 사모투자신탁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4. 개방형

5. 추가형
6. 사모형
7. 종류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 및 투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래스 A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선취판매수수료를 납입한 적격투자자에게 투자자격이 주어지는 수익증권
2. 클래스 C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적격투자자에게 투자자격이 주어지는 수익증권
3. 클래스 C-I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적격투자자 중 기관투자자 및 기금 투자자에 한하여 투자자격이 주어지는 수익증권
4. 클래스 C-S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전담중개업자,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원활한 운용규모 유지를 위하여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인정하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투자자격이 주어지는 수익증권
5. 클래스 C-W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적격투자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 및 특정금전신탁에 한하여 매입자격이 주어지는 수익증권
6. 클래스 C1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50억 이상 매입한 적격투자자에게 투자자격이 주어지는 수익증권

④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제249조의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자산 보관관리보고서 등 교부, 투자운용인력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

1.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제4조의 2 (투자권유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5조의 2 (전담증개업자)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업자를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증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증개업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5.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처분 등의 업무
6.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7.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8.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10.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를 하는 업무

제5조의 3 (업무의 위탁)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신탁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6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이 신탁계약 및 핵심상품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7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6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8조(추가설정)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 제76조 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신탁금의 납입)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7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이하 "금전"이라 한다)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9조의 8 제4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절 수익증권 등**제10조(수익권의 분할)**

-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해당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 및 그 좌수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1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 클래스 A 수익증권
 2. 클래스 C 수익증권
 3. 클래스 C-I 수익증권
 4. 클래스 C-S 수익증권
 5. 클래스 C-W 수익증권
 6. 클래스 C1 수익증권
-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수익증권의 양도)

-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제4조 규정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의 결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수익증권의 양도시 양수인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수익자명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3.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 등에서 정하는 사항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제14조(자산운용지시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 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 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제15조(투자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은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주식 롱바이어스(Equity Long-biased) 전략: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성장산업 및 기업에 대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투자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전략
 2. 룽숏 페어트레이딩 전략: 상관관계가 높은 두 자산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은 매수(롱), 고평가된 자산은 매도(숏)하여 방향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
 3. 파생상품 전략: 지수 및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외 파생상품을 통해 주식 롱온리(Equity Long-only) 전략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동시에, 시장 하락 구간에 포트폴리오를 해지(hedge)하는 전략
 4. 이벤트 드리븐(Event-Driven): 수익 추구가 가능한 특정 이벤트(유·무상증자, Block Deal, 인수합병 등)를 중심으로 알파를 취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특별한 상황(Special situation) 이벤트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벤트(Frequent event)에서도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제15조의2(투자대상자산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또한 시장상황에 대한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에 따라 순투자비중

을 0(零, zero) 또는 그 이하로 상당기간 유지할 수도 있고, 금리 및 투자 기회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투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1. 국내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단,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3. 국내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4.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
 5.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금전 및 증권의 차입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

제16조(자산운용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단,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 라.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하 같음)
 - 마.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5. 그 밖에 법 및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4절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17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 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 2 (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 ①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핵심상품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 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핵심상품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절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19조(수익증권의 판매)

-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 ② 수익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수익자는 매일(이하 "설정청구일"이라 한다)에 한하여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설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설정청구일이 휴일인 경우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
- ④ 수익자는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설정청구일의 15시 30분까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설정일의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에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설정청구일에 대한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12월은 한국 거래소의 최종개장일을 최종영업일로 한다)로 한다.

제20조 (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

-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100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를 말한다.
 1.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 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제1항에 따른 수익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유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하여야 한다.
- ④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자의 수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 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판매한다.

제21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해당 설정청구일의 **제2영업일(D+1일)**, 이하 “설정일”이라 한다)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12월은 한국 거래소의 최종개장일을 최종영업일로 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제32조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일)**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2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매일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 한다)** (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의 15시 30분 까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환매청구일에 대한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12월은 한국 거래소의 최종개장일을 최종영업일로 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잔고(평가금액)가 법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환매가 가능하나, 법상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환매를 하여야 하며, 환매할 경우 투자신탁 잔고는 환매청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일이 아닌 날에 환매청구를 하거나 환매청구일 15시 30분 이후에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일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에 환매 청구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한 해당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12월은 한국 거래소의 최종개장일을 최종영업일로 한다)로 한다.

② 판매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성과보수금액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성과보수금액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환매대금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환매연기)

-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1항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를 적용하며, 수익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판매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판매회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제6절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제25조(집합투자재산 평가)

-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기준가격 산정)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집합투자재산에서 부담한다.
-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1항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시 제34조에 의한 성과보수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7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8조(결산서류의 작성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③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산,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0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성과보수 금액 및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익분배금"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신탁계약기간 종료시까지 현금화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재산은 수익자들에게 자산을 현물로 분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4조 환매연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이익초과분배금,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절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3조(보수)

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 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수율	클래스 A	클래스 C	클래스 C-I	클래스 C-S	클래스 C-W	클래스 C1
집합투자업자	연 1,000분의 10					
신탁업자	연 1,000분의 0.50					
일반사무관리	연 1,000분의 0.25					
판매회사	연 1,000분의 5.0	연 1,000분의 10	연 1,000분의 1.0	연 1,000분의 0.1	연 1,000분의 0.0	연 1,000분의 5.0

판매회사 선취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	------------	------------	------------	------------	------------

제34조(성과보수)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보수 이외에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취득한다.
- ② 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판매사별로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계산되며, 제4 항에서 정한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한다.
- ③ 성과보수는 수익자의 계좌별로 그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성과보수계산기간

- 가.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한 후 첫 회계기간 말일에 도달하는 경우, 수익자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기간 말일까지
- 나. 가목에 따른 회계기간 이후에 회계기간 말일에 도달하는 경우, 회계기간 초일부터 매 회계기간 말 일까지
- 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회계기간 초일부터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다만,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환매하는 경우,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2. 성과보수금액 및 계산방법

가. 성과보수금액 : Max [초과수익금액⁽¹⁾ x 성과보수율⁽²⁾, 0]

나. 계산방법

(1) 초과수익금액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³⁾ – High Water Mark 평가액 ⁽⁴⁾
(2) 성과보수율	15%
(3)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해당일 현재 좌수 x 해당일에 계산된 1좌당 결산시 기준가격. 다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좌수 x 1좌당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 가격]
(4) High Water Mark 평가액	<p>a. 제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가액⁽⁵⁾. 다만, 수익증권이 여러 번 취득 된 경우에는 각 취득가액의 합으로 한다.</p> <p>b. 제 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Max [취득가액, 당해 및 이전 각 회계 연도 초일 투자신탁 평가액⁽⁶⁾]. 다만, 당해 회계연도 초일 이후에 수익증권의 취득이 추가로 있었던 경우에는 Max [취득가액, 당해 및 이전 각 회계 연도 초일 투자신탁 평가액⁽⁶⁾] + \sum(추가로 취득된 취득가액) 으로 한다.</p> <p>c. 제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환매 청구 시 a. 또는 b.에 따른 High Water Mark 평가액 x 환매좌수 / 총좌수</p> <p>d. 회계연도 안에 수익증권의 환매가 존재하는 경우 잔여 High Water Mark 평가액 : High Water Mark 평가액 - \sum(해당 High Water Mark 평가액 x 해당 환매좌수 / 환매 당시 총좌수)</p>

(5) 취득가액	a. 매입좌수 x 1좌당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6) 회계연도 초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해당일 현재 좌수(해당일 재투자좌수 포함) x 해당일에 적용되는 1 좌당 기준가격

3. 성과보수 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평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수를 차감한 금액이 투자원금(취득가액과 재투자금액을 포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성과보수는 환급하지 않는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산된 성과보수를 다음 각 호에 정한 날에 취득한다.

1. 이익분배금 지급일. 다만, 당해 이익분배금보다 성과보수가 클 경우 세후 이익분배금 범위 내에서 성과보수를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까지 이연되며, 다음 이익분배금 지급일에 당해 이연된 성과보수와 해당 성과보수 계산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보수를 해당 이익분배금으로부터 취득하게 되어 이연된 성과보수를 순차적으로 우선 지급한 후 해당 성과보수 계산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2. 수익증권의 일부환매일. 다만, 이 경우에는 위의 제1호에 따라 이연된 모든 성과보수와 당해 성과보수를 환매금액으로부터 일부환매된 금액에 비례하여 취득한다.

3. 수익증권의 전부환매일. 다만, 이 경우에는 위의 제1호에 따라 이연된 모든 성과보수와 당해 성과보수를 환매금액으로부터 취득한다.

⑤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성과보수산정,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또는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⑥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보수 이외에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투자신탁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⑦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운용인력

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디에스자산운용 주식운용1본부에서 담당하며, 나목의 책임투자운용인력이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나. 책임투자운용인력의 경력

이름	직위	주요경력
김창진	상무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 NH투자증권 기업분석2팀 - 키움투자자산운용 리서치팀 - 디에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BNK자산운용 주식운용1팀 - (현)디에스자산운용 주식운용1본부

2. 운용성과 : (기준일 : 2025년 9월 2일)

집합투자기구명	설정일	설정금액(억원)	누적수익률(%)
디에스 지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16-02-02	135.47	59.87
디에스 수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16-02-02	211.95	88.09

디에스 복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16-03-02	218.32	91.05
디에스 현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16-03-02	134.37	69.77
디에스 정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16-04-18	108.49	64.91
디에스 진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16-05-23	139.46	68.55
디에스 승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16-08-19	63.14	66.55
디에스 Beyond.M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17-07-03	144.72	60.50
디에스 고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17-07-17	146.25	69.57
디에스 명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17-08-16	153.73	66.47
디에스 장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17-11-29	64.63	64.39
디에스 신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18-01-26	135.15	64.67
디에스 히든챔피언 3 호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19-05-14	123.17	36.42
디에스 New Korea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21-03-09	95.86	63.45
디에스 KBIZ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1 호	2021-03-24	790.45	83.21
디에스 New Korea II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21-11-16	54.12	54.29
디에스 히든챔피언 VI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22-01-03	33.21	41.15
디에스 Quattro. A2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22-05-30	63.05	29.09
디에스 Focus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23-11-20	77.28	49.95
디에스 MG 목표수익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1 호	2025-05-21	300.00	16.87
디에스 Premier 목표달성형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25-06-26	149.84	1.15
디에스 히든챔피언 X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25-07-24	51.00	-0.15

디에스 Prime Y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25-08-04	79.28	0.17
디에스 Prime H 목표달성형 일반 사모투자신탁(모펀드)	2025-08-19	331.79	1.39

* 상기 수익률은 제34조제7항제1호나목의 책임투자운용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로 보수공제전 수익률입니다.

제35조(판매수수료)

- ① 판매회사는 클래스 A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 이내에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클래스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이내
- ③ 클래스 A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37조(기타 운용비용 등)

- 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수익자에 대한 고지 및 수익자총회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 6.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9.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 제공과 관련된 비용
 - 10. 법률 및 회계 관련 자문 실사 비용
 - 1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자문비용
 - 12. 집합투자재산의 해지 및 청산으로 발생하는 제반비용
 - 13.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37조의 3 (전담중개업자 관련비용)

제37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담중개업무 제공과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말한다.

제8절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38조(신탁계약의 변경)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주된 투자대상자산, 투자전략 및 운용제한(금전차입 등을 포함한다) 등의 변경
 2.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3. 신탁업자의 변경(단, 합병·분할·분할합병, 제38조의 2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38조의 2(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핵심상품설명서에 반하여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자로서 중대한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법적 의무·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본인이 변경을 요청하여,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 ③ 수익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제33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지급금액 :
 - 가.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 나.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 사업성평가, 금융자문 등) + 변경 기준일 전일 기준으로 계산된 성과보수
2. 대상 기간 : 변경일로부터 1년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3. 지급 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변경 시행일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본조 제3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투자신탁의 해지)

- ①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법 제249조의9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4.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챈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챈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챈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9절 보칙

제41조(투자신탁의 합병)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3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공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또는 「상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시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 2(수익자총회 및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매의 연기 경우에는 법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44조(손해배상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핵심상품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5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46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관할법원)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

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14층
디에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김 성 훈 (인)

신탁업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신한투자증권(주) 대표이사 이 선 훈 (인)